산업안전 Q&A



16층 주상복합건물 신축중인 공사에 형틀목수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7층 작 업중이데 신축건물형틀 목수이다보니 건물외벽을 많이 작업해야 하는데 파이프로 작 업난간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안전발판도 없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에 현장참여 노동자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려면 어느 곳에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 지요?

또한 원수급자와 형틀 하수급자가 있는데 신축건물의 외벽 작업난간대에 대해서는 어 느쪽에서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시설)설치의 책임이 있는지요? 안전점검시 부적격 판 단이 내려진다면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어떠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한다면 몇일 이내로 현장점검을 해야한 다는 법률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현재 7층시공중인데 같이 작업하던 인부중 1명이 손가락뼈가 부러져 산재사고로 처리 하려던 중원수급자의 동의가 즉시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0여일 후에 원수급자의 확 인를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6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인부의 6주시에 임금이 6주일분의 평 상임금이나오는지혹은일부가차감되는지를알고싶으며예를들어6주진단시에는평 상임금에서 어느 정도 차감하는지와 산재사고 처리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였는 지등을설명한예도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안전상의 조치)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 험이 있는 장소.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ㆍ비래할 위험이 예상 되는장소에는그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도록되어있으며,안전상의조치의 무는원수급자 및 하수급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 2 안전점검의 신청자격과 관련 법률조항 유무에 관한 질의와 관련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작업장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근로자가 작업 중에 현저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노동관서에서는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작업장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지방노동관서로 위험상황신고를 하 실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1588-3088, 324-4545)
- 3마지막사항인산재사고로인한평균임금산정등산업재해보상업무에관한사항은근로복지 공단 소관이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산업안전 Q&A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자체검사) 동시행규칙제75조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 사기관을신청할때

- 1 법인(주식회사)이아니면지정요건이 안되는지의여부 별첨 4호 서식의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서에는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의 정관에 갈 음할수있는서류로가능하다고되어있음]
- 2 지정검사기관의 이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하게 지정기관을 신청할 때 노동사무 소담당자의자진판단으로등록거부를할수있는지의여부
- o 법인이아니면지정요건이 안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 는자는기계,기구에 대한검사여부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로 규정되어 있는 바.지정검사 기관으로지정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법인이어야함.
- o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여부 결정(판단)
- -지정검사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관내 행정대상(자체 검사 대상 기계 기구 대수 등 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자체검사 대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함(즉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무조건 지정하 는것은아님)

저희회사에서는공사를하게되면외부업체와 "안전협의록" 을작성합니다.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여 문서로서 명시를 하게 되는 데 외자설비를 들여오면서 외국인 Supervisor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저희회사뿐아니라타회사에도외국인과안전에관한사항이있을것으로생각되 는데이럴경우어떠한법에적용되는지도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동일한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경우에는 동법 제29조 의 규정에의한 안전 · 보건에 관한 사업주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도급인으로서 안전 · 보건 조치가 별도로 행해져야 합니다.

다만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안전협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없음을 알 려드리며 안전협의록에 대한 별도의 양식(영문양식 포함)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